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2차  
상임감정위원(비전일,정형외과) 공개모집 재공고

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」은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·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,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(비전일,정형외과)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. 8. 7.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

1모집 분야 및 인원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     | 근무<br>형태 | 인원 | 수행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임기 | 근무<br>지역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
| 상임<br>감정위원<br>(비전일) | 정형외과 | 주 3일     | 1명 | ○ 의료분쟁 조정 · 중재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<br>○ 의료분쟁의 사실조사<br>○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<br>○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<br>○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 | 3년 | 서울<br>본원 |

- ※ 지원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, 세부 전문분야는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예) 진료과목: 정형외과 / 세부 전문: 척추
- ※ 지원자가 모집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도 임용 절차 진행 예정
- ※ 수행 업무 세부 내용은 『상임감정위원 직무기술서』 참조

## □ 응시 자격

- 대한민국 국민이며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및 「인사규정」 제13조의  
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

##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-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 -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 「인사규정」 제13조

1.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
- 2~8 (상동)
9. 「부패방지법」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10. 「의료법」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
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13.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4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## □ 임용 자격 기준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     | 자격 기준*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상임<br>감정위원<br>(비전일) | 정형외과 | 정형외과 전문의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** | 겸직 불가 |

\*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

\*\*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는 불가하며,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공학과는 정형외과 학력은 학사 이상으로 추후 절차 진행 간 관련 면허증·자격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

## 3

### 근로 조건

□ (보수 수준) 우리 원 「보수규정」에 의함

□ (임기) 임기 개시일로부터 3년(근무성과 등에 따라 연임 가능)

※ 임기 시작일은 최종합격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

□ (근무 지역)

○ (서울본원)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, T타워

□ (근무 시간)

○ (정형외과) 주 3일 근무(주 24시간, 평일 09시 ~ 18시)

※ 비전일 상임위원의 경우 반일 단위 근무 가능하며, 임용 확정 후 인사담당 부서와 별도 협의 필요

## □ 공고 및 지원서 교부

- 공고 기간: 2026. 8. 7.(금) ~ 8. 19.(수), 12일간
- 공고 매체(온라인 공고)
  - 우리 원 홈페이지: [www.k-medi.or.kr](http://www.k-medi.or.kr)
  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: [www.mohw.go.kr](http://www.mohw.go.kr)
  -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: [www.alio.go.kr](http://www.alio.go.kr)
  -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: [www.gojobs.go.kr](http://www.gojobs.go.kr)

## □ 지원서 접수(위 온라인 공고 매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)

- 접수기간: 2026. 8. 7.(금) ~ 2026. 8. 19.(수) 18시까지
- 접수처: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본부(서비스관리부)
  - ※ (우 04637)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, 21층 (T타워)
- 접수방법
  - **등기우편**(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
    - ※ 방문, 이메일, 팩스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
- 유의사항
  - 지원서는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
    - ※ 유효한 경력(경력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 발급이 가능한 경우)에 한하여 기재
    - ※ 경력, 가점사항 등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거나, 제출한 증명서류와 내용이 다른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 취소 가능

## □ 【1차 전형】 서류심사

- 대상: 접수기간, 접수방법 등을 준수한 지원자
- 심사방법: 지원 동기, 연도별 경력기술사항,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성, 직무수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
- 1차 전형(서류심사) 합격자 발표
  - 발표(예정)일: 2026. 9. 9.(수)
  - 방법 : 합격자(모집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)에 한하여 개별 통보
  - 내용 : 서류심사 합격 통보, 면접심사 및 증명서류 제출 안내
- 증명서류 제출기간: 2026. 9. 9.(수) ~ 9. 16.(수) 18시까지
  - ※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변경시 합격자에게 변경된 증명서류 제출기간 통보예정
  - ※ 모든 증명서류는 가급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 서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
  -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(이메일, 팩스 등 기타 방법 제출 불가)
  - 제출기간 내 증명서류 미제출시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

## □ 【2차 전형】 면접심사

- 대상: 서류심사 합격자
- 면접(예정)일: 2026. 9. 10.(목) ~ 9. 23.(수) 중
  - ※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자 확정 통보
- 장소: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
- 심사방법: 개별 면접(다대일 면접)을 통해 전문성 · 역량, 조정 및 통합능력, 리더십, 공정성,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## □ 최종 합격자 발표

- 발표(예정)일: 2026. 9. 30.(수)
- 방법 :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

## □ 임용예정일: 2026. 9~10월 중

※ 임용 예정일은 최종 합격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

※ 「1차 서류심사», 「2차 면접심사», 「최종 합격자 발표」 일정은 예정일이므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6

### 가산점

## □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

| 구 분         |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취업지원<br>대상자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        | 각 전형절차<br>만점 기준으로<br>매 전형마다<br>가점 적용<br>(5~10%) |
|             |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애인         |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, 제28조 및 시행령 제3조 | 각 전형절차<br>만점 기준으로<br>매 전형마다<br>가점 적용<br>(5%)    |

- ※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사항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, 제4항에 따라 적용
- ※ 증명서류 제출기간 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하며, 가산점 항목 중복 존재시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부여

### □ 지원자(지원서 접수시) : 지원서 등

- 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 계획서(별지 서식) 각 1부
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별지 서식) 1부

### □ 서류전형 합격자(면접전형 응시 전) : 증명서류

#### 【공통 제출서류】

- 경력(재직) 증명서(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) 각 1부
- 면허증, 자격증 사본 각 1부(의사 면허증, 전문의 자격증 포함)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소득금액증명(최근 1년 내역)
  - \* 발급처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,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)
-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 결과 1부
  - \* 발급처 : 보건복지부

#### 【추가 제출서류(해당자에 한함)】

-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류 1부
- 기타 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부

※ 외국어 발급 증명서일 경우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※ 지원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제출된 증명서류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

※ 증명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 가능하나, 지원자 확인을 위해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하여야 함

### □ 최종 합격자 : 임용동의서 등

- 임용동의서 1부 및 ※ 반드시 자필로 작성
- 취업 제한 관련 체크 리스트 1부 ※ 반드시 자필로 작성
- 채용 신체검사서, 영수증, 통장사본 각 1부
- 가족관계등록부(기본증명서) 상세 1부
- 주민등록등본 2부
-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) 1부
- 반명함판 사진(3×4) 3매

- ☐ 모집분야 진료과목과 근무형태(비전일)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서 작성 등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☐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만을 유효경력으로 인정하여 임용 시 연봉에 반영함. 지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입사 후 최초 경력 산정 및 경력 재확정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(단, 군경력 제외)
- ☐ 지원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
- ☐ 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 지원서와 증명서류의 불일치,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나 누락,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☐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요청하는 증명서류는 지원자가 작성한 사항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☐ 면접심사시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, 모바일 신분증)을 지참하여야만 응시 가능합니다.
- 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세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☐ 모집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☐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후에라도 채용절차상 부정행위가 있었음이



발견되거나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.

□ 최종 합격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

※ 임용 예정일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

□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.

※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면직처리를 완료하여야 함

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지원자(최종 합격자 제외)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(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예정)

□ 채용비위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기초심사자료, 성명, 연락처는 보관합니다.

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6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,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개모집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《상임위원 공개모집 관련 문의》

• 담당자: 02-6210-0156

• 문의시간: 평일 09시~12시, 13시~18시

※ 전화 외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.